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지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3
----------	-----

발의연월일 : 2026.03.13.

발 의 자 : 유지웅·박미정·이은경
김지훈·안병두·신정태
하서영 의원(7명)

찬 성 자 :

1. 제안이유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임기와 연임에 관한 통제장치가 미흡해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문의 임기 및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별지 서식을 포함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와 의무를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변호사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라.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서초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의회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서초구 입법·법률고문직”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전이라도”를 “임기 전이라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유없”을 “사유 없음”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되, 재위촉”을 “하되,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입법·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25만원”을 “25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50,000원”을 “15만 원”으로 한다.

제9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소송사무처리규칙”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문변호사외”를 “고문변호사 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귀 의회의 입법·법률 고문직 (재)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귀하

위 축 장

(성 명)

귀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u>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u>의회운영</u> 및 의안 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p> <p>4. (생략)</p> <p>5. 기타 <u>의장이</u>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p> <p>② (생략)</p> <p>제4조(위촉) ① (생략)</p> <p>② 입법·법률고문은 <u>서울특별시서초구 입법·법률고문직</u>을 겸할 수 없다.</p> <p>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u>별지제1호서식</u>에</p>	<p>제1조(목적) ----- <u>서초구의회</u>----- ----- ----- ----- -.</p> <p>제2조(직무) ①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u> -----</p> <p>4. (현행과 같음)</p> <p>5. --- <u>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직</u>----- -----.</p> <p>③ ----- ----- --- <u>별지 제1호서식</u>-----</p>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
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생략)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신설>

제8조(고문료 및 회의비) ① 입법
·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고문료 25만원(부
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을 지급
한다.

- ② (생략)
- ③ 법률자문료는 1건당 150,000

-----.

제5조(해촉) -----
- 임기 전이라도 -----

-.

1. ~ 3. (현행과 같음)
4. ---- 사유 없-----

5.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① -----
----- 하며,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
-----.

② 입법·법률고문의 경우 임기
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입
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고문료 및 회의비) ① ----

----- 25만 원-----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15만 원---

<p>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을 지급한다.</p>	<p>-----.</p>
<p>제9조(소송수임료 등)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u>서울특별시 서초구소송사무처리규칙</u>을 준용하여 지급한다.</p>	<p>제9조(소송수임료 등) ----- ----- ---- 「<u>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u>」-----.</p>
<p>제10조(특례) 다음의 경우는 <u>고문 변호사</u>외의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의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1.·2. (생략)</p>	<p>제10조(특례) ----- <u>고문 변호사 외</u>----- -----. ----- -----. 1.·2. (현행과 같음)</p>


[붙임]

관 계 법 령

□ 변호사법(시행 2021. 1. 5.)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지웅 의원 대표발의)서명부

발 의 자		찬 성 자	
의 원 명	서명·날인	의 원 명	서명·날인
유지웅			
곽의정	곽의정		
이은경	이은경.		
김지훈	김지훈		
안병주	안병주		
신정재	신정재		
곽서영	곽서영		